

## 미국사례

### 악의 또는 해의를 가지고 명예훼손을 한 경우 현실적 손해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PEISNER v. DETROIT FREE PRESS

미시간주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 인용

## 사실개요

Michigan 주에서는 명예훼손에 있어서 현실적 손해배상(actual damages)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and punitive damages)이라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1973년 11월 Detroit Free Press 신문사는 어느 변호사(원고)에 관하여 기자가 쓴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였다. 원고는 허위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하였다 하여 신문사와 기자를 상대로 현실적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판사는 신문사측이 그 기사가 허위임을 알거나 또는 진실여부를 무분별하게 무시하고(with the knowledge of falsity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 이를 현실적 악의라고 한다), 이를 게재하였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신문사와 기자에 대하여 52,000 달러의 현실적 손해배상과 100,000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1심이 원고에게 동일한 원인에 대하여 2종의 배상을 인정하였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새로이 재판하도록 환송판결을 하였다.

원고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해의 또는 악의(ill will or bad faith, 이를 보통법상의 악의라고 한다)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incremental injury to feelings)을 배상해 주기 위한 보상적 기능을 가질 뿐이라고 밝히고,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실적 악의가 아니라 보통법상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그 판시이유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다.

## 판결이유

보일(Boyle) 대법원판사가 전원 합의부(En Banc)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Michigan 명예훼손 법규상의 응보적 및 징벌적(exemplary and punitive) 손해배상(역주: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만 표현한다) 이 명예훼손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고통(injury to feelings)에 대한 현실적 손해배상(actual damages)과 중복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하기 위한 기간을 허여한 바 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명예훼손 법규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 본질상 순전히 보상적(compensatory)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다만 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법상의 악의(common-law malice)를 입증하여야만 한다고 판시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배심원들이 판사의 적절한 지시(instruction)아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현실적 손해배상과 중복되지 않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악의에 관하여 적절한 지시를 받지 않은 배심원들에 의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범위에 대한 새로운 재판을 위하여 환송을 명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되, 다음에 실시하는 바와 같은 원칙들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 판결을 수정한다.

I

변호사인 원고 발포어 페이스너(Balfour Peisner)는 1973년 11월 판 디트로이트 자유언론(Detroit Free Press)이 루이스 헬드만(Louis Heldman) 기자가 쓴 기사를 동지에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여 동 자유언론과 헬드만 기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현실적 및 징벌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현재의 쟁점과 관계없는 문제들로 고등법원에 두 번 예심항소(pre-trial)가 된 후에 사건은 배심 재판에 의하여 심리되었고, 배심원들은 헬드만과 자유언론은 연대하여 현실적 손해배상(actual damages)으로서 52,000 불, 그리고 자유언론은 단독으로 추가적(additional) 손해배상으로서 100,000 불을 각 배상하라는 평결을 하였다. 자유 언론측의 재심(new trial) 및 소멸(remittitur, 역주 배심원들의 평결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사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새로이 재판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또는 법률상의 문제로서 원고에 대하여 평결받은 손해배상의 일부를 반환 내지 포기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신청은 기각되었다.

피고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자유 언론측의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1심판사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배심원들에게 한 지시(instruction)가 배심원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현실적 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소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고등법원은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중의 배상은 Michigan 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종의 처벌(punishment)이기 때문에,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오직 한번만 보상하도록 배상범위를 다시 결정하라고 명하였다. V. J Brennan 판사는 별개의 견으로 순전히 보상적인 성질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징벌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인한 혼란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면서 결론에 동조하였다.

원고는 Michigan 주 명예훼손 법규상 징벌적 손해배상(처벌형)이 가능하므로 고등법원의 환송판결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 법원에 상고하였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 기각된 자유 언론측의 부대상고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진정한 처벌형의 손해배상을 부정하는 확립된 판례원칙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 또한 우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법상의 악의(common-law malice)가 그 필수적 요건-이 사건에 있어서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이라고 판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되, 징벌적 손해배상부분에 관해서만 새로이 재판을 하도록 환송하기로 한다.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현실적 손해배상(actual damages)과 징벌적 손해배상(exemplary and punitive damages)에 관하여 별개의 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Michigan 주 명예훼손법(MCL 600. 2911; MSA 27A. 2911) 제 2 조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동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a)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기한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b)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그의 재산, 사업, 거래, 또는 감정에 관하며 그가 받은 현실적 손해(actual damage)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b) 징벌적 손해(exemplary and punitive damage)는 원고가 미리 피고에 대하여 원 기사에 대한 철회(retraction)의 뜻을 게재할 것을 통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상당한 시간을 준 경우 외에는 배상받을 수 없으며, 철회의사의 게재 또는 시정을 하였다는 증거는 피고의 선의의 증명 및 징벌적 손해의 경감(mitigation) 및 공제(reduction)를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철회(retraction)는 원래의 명예훼손 기사와 같은 형태, 같은 크기, 같은 판 그리고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같은 위치에 게재되어야 한다.」 (a)항은 「현실적 손해배상」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는 반면, (b)항은 원 기사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고 이를 게재하기 위한 상당한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다.

우선 「징벌적」이라는 용어 자체는 피고를 처벌(즉, 특정적 억지)하거나 또는 피고 외에 명예훼손을 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본보기를 보이기(즉, 일반적 억지) 위한 손해배상-현실적 손해에 추가하여-을 허용하려는 입법부의 의도가 아닌가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과 이를 해석하는 Michigan 주 법원판례의 역리를 보면 사정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명예훼손법의 원전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본 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응보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의 피고의 과실(fault)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증가된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현실적(즉, 보상적) 손해배상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원칙에 확립하고 있었다.

「응보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에 관하여, 어떤 이들은 그것이 현실적 잘못(actual fault)에 근거하고 있는 한 그것은 가해자의 나쁜 의도(wrong intent)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 언제나 가해자의 사악함의 정도에 따라 증가되거나 경감되는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의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것은 가해자에 대한 다양한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법률상 징벌적 또는 응보적 손해배상이라는 용어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오해되도록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사람, 재산 또는 명성(reputation)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의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injury to the feelings)을 배상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종 불법행위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 정신적 고통이고, 손상된 자존심이나 애정은 어떤 상황아래서는 매우 무거운 손해배상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Detroit Daily Post Co. V. McArthur, 16 Mich. 447, 452-453, 1868; Scripps v. Reilly, 38 Mich. 10, 23-24, 1878).

1885년에 제정되었던 시초의 명예훼손법은 현실적 손해배상의 요소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1895년 의회는 Park v. The Detroit Free Press Co. (72Mich. 560; 40 NW 731, 1888) 사건에서 이를 비판한 캠벨(Campbell) 대법원판사의 의견의 영향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과는 별도로 현실적 손해배상의 요소로서 정신적 고통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1895년의 개정을 필두로 현재까지의 모든 명예훼손 법규의 개정과 편찬은 현실적 손해배상-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과 징벌적 손해배상, 두 가지 모두를 규정하고 있다.

법규상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현실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독립적 취급에도 불구하고, 본 법원은 「징벌적」이라는 용어를 오직 명예훼손에 있어서 피고의 잘못(fault, 또는 보통법상 의미에 있어서의 악의, malice)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가적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배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계속하여 해석하여 왔다(예컨대, Long v. Tribune Printing Co., 107 Mich. 207; 65 NW 108, 1895; Boydan v. Haberstumph, 129 Mich. 137, 140; 88 NW 386, 1901; Poledna v. Bendix Aviation Corp., 360 Mich. 129, 144; 103 NW 2d 789, 1960).

입법부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상적 기능에만 제한하려는 법원의 일관된 해석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법규를 수정없이 새로 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입법부 자체가 어떠한 징벌적 손해의 배상이라도 이에 관한 확립된 보통법상의 해석에 부합하여야 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단정한다. 실제로 가장 최근의 1961년 명예훼손법 규정의 개정에서 의회내의 해당 위원회는 그 새로운 개정이 「현재의 법규해석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달았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현실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두 가지 모두가 오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보상적 손해배상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들 간의 차이점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Wise v. Daniel 사건 (221 Mich. 229, 223-234 ; 190 NW 746, 1922)에 있어서의 와이스트(Wiest) 대법원판사의 의견에 잘 나타나 있다.

「암소가 사람의 얼굴을 찔 때, 그 결과는 징이 박힌 구두로 얼굴을 걷어 찬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그러나 암소의 심술궂음은 아무런 분노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반면, 구두발길질 뒤에 있는 악의적 동기는 피해자의 분노감정을 증가시킨다. 사람이 신체적 상해를 가하면서 악의와 독기를 품고 했다면, 그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 그의 악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가 악의 적으로 손해를 가했다면, 배심원들은 나타난 모든 사정과 더불어 그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 있고, 그 보상으로서 원고가 받아야만 하고 피고가 변상하여야만 하는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명예훼손에 있어서, 손상된 감정에 대한 현실적 손해배상은 암소의 발길질에 의한 손해배상에 비유할 수 있는 것, 즉 원고는 단순히 명예훼손이라는 그 사실과 결과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는 것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의

피고의 악의(bad faith) 또는 해의(ill will)- 즉, 「구두발길질 뒤에 있는 악의적 동기」-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모욕감과 분노에 따라 증가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두 가지 형태의 손해배상이 모두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밀적 손해배상은 현실적 손해배상이 오직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을 사실상 보상해 줌으로써 그 기능을 다한 후에 작동하는 것이다.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간의 혼란을 피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이중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우리는 배심원들에 대한 판사의 지시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현실적」 손해와 「징벌적」 손해(증가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를 특정하고, 또한 (다음에 논의하는 바와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로써 현실적 손해배상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사건에 있어서의 추상적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배심원들에게 명하는 「특별한 평결형태」를 발전시키는 것이 신중한 절차와 사법심사(judicial review)에 기여할 것이다.

### III

위와 같이 판시함에 따라, 우리는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고가 명예훼손을 함에 있어서 보통법상의 악의-해의(ill will) 또는 악의(bad faith)라는 의미-를 가지고 행동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밖에 없다. 가장 최근에는(의료과실에 관한) Veselenak v. Smith 사건 판결에서 확인된 이 원칙은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도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다. 예컨대 Orth v. Featherly(피고에게 자의적인 악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징벌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Couch v. Mining Journal Co.(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그 보도가 악의적이었느냐에 달려 있다), Lawrence v. Fox(악의의 존재 또는 선의의 부존재는 손해배상의 산정을 징벌적 손해액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 등이다.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오직 피고의 악의 또는 해의(즉, 보통법상의 악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보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다음의 원칙은 징벌적 손해의 정의를 입증책임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이다.

우리는 일반 개인인 명예훼손사건의 원고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장벽들에 부딪칠 것임을 인정한다. 예컨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공공관심사에 대한 기사를 쓸 수 있는 정당한 특권이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그리하여 현실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피고의 「현실적 악의」(actual-malice)- 즉, 허위의 인식(knowledge of falsity) 또는 진실의 무분별한 무시(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를 입증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실시하는 원칙에 따르면, 원고가 징벌적 손해의 배상을 받으려면 더 나아가 피고의 보통법상의 악의(common-law malice)뿐만 아니라 법규상의 철회요청 절차를 밟을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관심사에 관한 보도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중요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별한 제한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무분별하게 그러나 선의로 행동하는 기자의 책임은 현실적 손해배상에 한하게 하고, 무분별할 뿐만 아니라 악의로 행동하는 기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추가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피고가 해의 또는 악의를 가지고 행동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하게 손해배상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면서 원고들에게 완전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쌍방의 정당한 이해를 보호하는 것이다.

#### IV

이 사건에 있어서 1 심판사는 현실적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배심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이제 여러분이 원고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피고의 보도, 출판으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여러분이 인정하는 각 손해요소에 관하여 원고에게 상당하고, 공정하며 그리고 적당한 배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여러분은 원고가 입었다고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손해 항목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그의 재산 또는 사업, 거래, 직업, 감정, 정신적 고통,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부정, 당황, 조롱, 수치, 굴욕 또는 공포 등에 관하여 입은 현실적 손해, 여러분은 또한 원고가 장래에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어느 것이 입증되었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상상이나 짐작 또는 추측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들 손해 요소들에 대하여 산정할 금액-예컨대 정신적 고통, 사회적 향락의 부정, 당황, 굴욕감, 모욕감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한 배상금액-은 그 정확한 액수가 증명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그 결정을 여러분의 건전한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평결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그쳐야 하고 피고를 처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징벌적 손해에 관하여 판사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자, 배심원 여러분, 방금 내가 인용한 미시간주 법률은 정밀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률에 따르면, -여러분이 오해를 하였다면 이를 수정해드리고자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목적은, 나는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기 보다는 추가적 손해배상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고통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추가적이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초점을 원고의 고통에 두어야 하지만, 그러한 추가적인 손해가 배상 되어야 하느냐를 결정함에 있어서의 초점은 피고의 행동에 둘 것을 요구합니다.」 「피고들이 허위임을 알고서 행동하거나 또는 진실을 무분별하게 무시하고 행동한 경우 명예훼손의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것이 Michigan 법원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고통이 더 심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현실적인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추가적인 배상이라고 부르는 징벌적 배상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원고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그 기사를 보도, 출판, 게재함에 있어서 그것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그것이 허위이나 아니냐를 무분별하게 무시하고서 하였다고 입증하였다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원고에게 내가 전에 설명한 징벌적 또는 추가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허위의 인식 또는 무분별한 진실의 무시에 전한 증거가 명백하고 설득력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단순한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만으로는 추가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출판업자가 그 기사가 허위임을 알거나 또는 진실여부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그 기사를 게재, 출판하였다면, 여러분은 원고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원고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입니다-피고가 허위임을 알았다면 그것이 훨씬 더 심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추가적 손해배상을 위하여 원고에게 공정한 보상이 되는 추가적인 손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이 징벌적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피고를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1 심판사가 위 두 가지의 손해배상에 관한 지시를 함에 있어서 종전의 판례에 충실하고자 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 A. 현실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순전히 보상적인 기능에 제한하려는 우리의 원칙은 명예훼손 사건에 있어서 용인되는 현실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현실적 손해배상은 어떤 「보상적」인 징벌적 손해도 포함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위 원칙이 혼란을 초래하여 왔음은 이해 할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고의 악의로 인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incremental injury to feelings)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혼동을 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실적」이거나 「징벌적」인 손해배상 모두가 원고를 보상해 주지만, 후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통법상의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손해배상액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현실적 손해배상에 관하여 배심원들에게 한 판사의 지시는 본 주에서 정의되고 있는 바에 따라 현실적 고통에 관한 항목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이 피고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받았다. 명예훼손이라는 사실과 결과 그 자체로 인한 현실적 손해의 배상을 제한한 지시부분은 좀 더 정확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 지시가 현실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표현하였다고 인정한다. 배심원들이 후자의 유형이 보상적이어야 함을 분명히 경고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에 관하여 파기할 만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 B. 징벌적 손해배상

피고의 보통법상의 악의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의하는 우리의 결론에 비추어, 우리는 1 심판사가 배심원들에게 한 지시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다. 배심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제조건으로 원고에 대한 보통법상의 악의(common-law malice, 악의-bad faith -또는 해의-ill will-)를 인정하라고 하는 대신, 판사는 헌법이론상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허위의 인식 또는 진실의 무분별한 무시)의 인정만으로 그러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데 충분하다고 지시하였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현실적 악의」(책임을 인정하기 위한)가 보통법상의 악의를 인정하기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위 양 기준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이 추가적 손해배상의 전제조건으로 특히

보통법상의 악의-원고에 대한 해의 또는 악의라는 의미에서-에 관하며 지시를 받았어야 한다.

V

결론적으로, 우리는 배상범위에 관하여서만 새로운 재판을 하도록 환송을 명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되, 이상에서 실시한 원칙에 따라 그 판결을 수정한다. 배심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제로서 보통법상의 악의에 관하여 적절한 지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환송심에서 심리하여야 할 쟁점은 피고들 모두 또는 어느 일방에게 보통법상의 악의가 있는지 여부와, 보통법상의 악의가 입증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보상해 주어야 할 악의로 인한 추가적 고통의 존부 및 그 범위에 한한다.